

감정평가서

감정의뢰인	(주)하나다을신탁
건 명	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78-7
감정서번호	가람 0513-05-31013

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(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)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, 개작(改作), 전재(全載)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[주]가람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
KAARAM APPRAISAL CO., LTD
 TEL : 031)707-5733 FAX : 031)707-5766

(토지 · 건물) 감정평가표

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.

감정평가사

이 강 수



감정평가액	金 四 拾 壹 億 八 仟 五 佰 參 拾 九 萬 圓 整 (₩4,185,390,000.-)					
의뢰인	(주)하나다울신탁		감정평가 목 적	일반거래		
채무자			제출처	(주)하나다울신탁		
소유자 (대상업체명)	주식회사코리아냉장		기준가치	시장가치		
			감정평가 조 건	—		
목 록 표시근거	등기사항전부증명서		기준시점	조 사 기 간	작성일	
			2013.05.31	2013.05.28 ~2013.05.31	2013.06.04	
감 정 평 가 내 용	공 부 (公 簿) (의뢰)		사 정		감 정 평 가 액	
	종 별	면 적 (수 량) (㎡)	종 별	면 적 (수 량) (㎡)	단 가	금 액
	토지	25,233	토지	25,233	110,000	2,775,630,000
	건물	3,960	건물	3,960	356,000	1,409,760,000
	합 계					₩4,185,390,000
		이	하	여	백	
심사 확 인	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.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					

오 재 수

(인)

토지 입지분석 및 개별요인 분석표

소 재 지	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78-7
지 리 적 위 치	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소재 속칭 "당진마을" 북측 인근에 위치함.
주 위 환 경	본건 인근으로 단독주택, 공장, 창고,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,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.
교 통 환 경	본건은 서측 인근 17 번 국도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, 북측으로 약 10Km 거리에 중부고속도로 일주 I·C, 남동측으로 약 7Km 거리에 음성 I·C 가 소재하는 등 창고용지로서 전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.
형 상 지 세	본건 토지는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 대비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임.
이 용 상 황	가격시점 현재 "창고 건부지" 및 일부는 조성된 나지 상태임.
접면도로상황	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노폭 약 6 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며, 도로관리상태는 보통임.
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 사항	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지역 300m(소, 말, 양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개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공부와와의 차이 및 기 타	없음.
제 시 외 물 건	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㉠(판넬조 판넬지붕 약 4 m ² 창고), ㉡(판넬조 판넬지붕 약 8 m ² 경비실), ㉢(판넬조 판넬지붕 약 4 m ² 창고)이 소재하나, 구조, 규모 및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철거와 이동이 용이하여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.
주 위 전 경	



건물 개별요인 분석표

건물의 구조 및 마감재 등	기호(가)~(라) 공히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으로서, 내, 외벽 : 조립식판넬 마감. 바닥 : 시멘트 마감. 창호 : 하이새시 창호. ~기둥은 H-Beam 구조로서 층고는 약 7~8 미터임.						
이 용 상 황	기호(가)~(라) 공히 창고시설로서, 현황 공실상태임.						
관 리 상 태	① 양호 ② 보통 ③ 불량			사용승인일		2010.09.07	
부 대 설 비 등	급배수 위생설비	난방 설비	냉방 설비	소화전 설비	화재탐지 설비	승강기 설비	주차 시설
	0	-	-	0	-	-	-
부합물 및 중물 과의 관계	없 음.						
공부와의 차이 및 기 타	본건 사용승인일은 2010.09.07 이나 착공일자는 2005.06.04 이고, 보존등기일은 2006.04.03 임.						
건 물 사 진							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. 감정평가의 개요

1. 감정평가의 목적

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소재 속칭 “당진마을”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로서,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, 다른 목적으로 감정평가시 평가서 기재내용 및 평가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음.

2. 감정평가의 근거

본 감정평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.

3. 감정평가 대상물건

가. 토지

기호	소재지	면적(㎡)	지목	용도지역	개별공시지가 (원/㎡) 2013.1.1
1	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78-7	25,233	창고용지	계획관리	81,300

나. 건물

기호	구조	주용도	규모	연면적 (㎡)	사용승인일
가	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(철판)	창고시설	지상 1 층	990	2010-09-07
나	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(철판)	창고시설	지상 1 층	990	2010-09-07
다	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(철판)	창고시설	지상 1 층	990	2010-09-07
라	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(철판)	창고시설	지상 1 층	990	2010-09-07
계				3,960	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4. 감정평가의 조건

없음.

5. 감정평가의 방법

가. 본 건 토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 토지와 용도, 주위환경 및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위치·교통·지형·환경·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우열비교분석 및 인근지의 적절한 토지가격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및 대상 토지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평가하였음.

나. 본 건 건물은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 18 조에 따라 구조, 용재, 시공의 정도 및 관리·이용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평가하는 원가방식에 의하였음. 다만, 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2005 년 6 월 4 일 착공하였으나 2010 년 9 월 7 일 사용승인을 득하였는 바,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일(2006 년 4 월 3 일)을 기준으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.

6. 기준시점

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 9 조에 의거 가격조사 완료일인 2013 년 05 월 31 일로 함.

※감정평가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 제 9 조 (기본적 사항의 확정)

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. 다만,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.

7. 임대관계 등

임대관계 없이 현장조사일 당시 공실상태임.

8. 기타 참고사항

없음.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I. 감정평가의 절차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Ⅲ. 감정평가액 산출근거

1. 토지의 평가

가. 비교표준지 선정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 9 조 및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 14 조에 의거,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, 지구, 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,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, 주위환경 등 제반가격 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로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음.

구분	본 건	표준지	지 번 도
소재지	당목리 478-7	당목리 476-5	
면적(㎡)	25,233	301	
지목	창고용지	대	
용도지역	계획관리	계획관리	
이용상황	창고	단독	
도로조건	세로(가)	세로(가)	
형상 지세	부정형 완경사	사다리 평지	
공시지가 (원/㎡)	81,300	81,000	
공시기준일	2013.01.01	2013.01.01	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나. 시점수정

1) 지가변동률

기 간	용도지역별	비고
	안성시 계획관리지역	
2013.01.01 ~ 2013.04.30	0.422%	2013 년 04 월 누계
2013.04.01 ~ 2013.04.30	0.135%	2013 년 04 월 지가변동률
누 계 (2013.01.01 ~ 2013.05.31)	0.562% (1.00562 배)	$(1 + 0.00422) \times (1 + 0.00135 \times 31/30)$

2013 년 05 월 이후는 미고시로 2013 년 04 월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적용하였음.

2) 생산자물가상승률 (기준일 2010 년 = 100)

$$\frac{2013 \text{ 년 } 4 \text{ 월 } 105.94}{2012 \text{ 년 } 12 \text{ 월 } 105.78} \approx 1.00151 (0.151\% \text{ 상향})$$

3) 적용 시점수정치

결정의견	생산자물가상승률은 거시경제지표로서 국지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, 당해 지역의 지가변동 추이가 적절히 반영된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적용함.
적용 시점수정치	1.00562 배

다. 지역요인의 비교

결정의견	본 건은 비교 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이 동일함.
지역요인 비교치	1.00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라. 개별요인의 비교

1) 개별요인의 비교항목

조건	항 목	세 항 목
가로조건	가로의 폭, 구조 등의 상태	폭
		포장
		보도
		계통 및 연속성
접근조건	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	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
		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
환경조건	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	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
	인근환경	인근 토지의 이용상황
		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
	자연환경	지반, 지질 등
획지조건	면적, 접면, 너비, 깊이, 형상 등	면적
		접면너비
		깊이
		부정형지
		삼각지
		자루형 획지
		맹지
	방위, 고저 등	방위
		고저
		경사지
	접면도로 상태	각지
		2 면획지
		3 면획지
행정적조건	행정상의 규제정도	용도지역, 지구, 구역 등
		용적제한
		고도제한
		기타규제(입체이용제한 등)
기타조건	기 타	장래의 동향,
		기타

2) 개별요인의 비교치

기호	가로 조건	접근 조건	자연 조건	획지 조건	행정적 조건	기타 조건	개별요인 비교치
1	1.00	1.00	1.00	0.85	1.00	1.00	0.850
결정의견	본 건은 표준지 대비 획지조건(규모, 지세, 경사도 등) 열세함.						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마. 그 밖의 요인 보정

1)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 17 조, 건설교통부 유권해석(건설부토정 30241-36538, 1991.12.28), 대법원판례 (98 두 6067(1998.7.10), 92 누 16300(1993.9.10))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전례, 매매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,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.

2)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식

$$\text{그 밖의 요인 보정치} = \frac{\text{비교사례단가} \times \text{사정보정} \times \text{시점수정} \times \text{지역요인} \times \text{개별요인}}{\text{표준지공시지가} \times \text{시점수정} \times \text{지역요인} \times \text{개별요인}}$$

3)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조사, 분석 자료

가) 본 건의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

기호	2011 년	2012 년	2012 년
1	78,300	79,600	81,300

나) 인근 유사토지의 호가 수준

용도지역	주위환경	표준적 이용	접면도로 등	호가수준(원/㎡)	비고
계획관리	농지와 임야, 주거, 공장, 창고 등 혼재 농촌지대	주거/공장/창고	세로변	90,000~135,000	인근 중개사무소 등 탐문조사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다) 인근 평가전례

일련 번호	소재지번	지목	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	도로조건 지세	면적 (㎡)	단가 (원/㎡)	평가년도 개별지가(원/㎡)	단가/ 개별지가	가격시점 평가목적
a (본건)	당목리 478-7	창고	계획관리 창고용지 창고	세로가 완경사	25,233	85,000	79,600	1.07	2012-06-20 (담보)
b (본건)	당목리 478-7	창고	계획관리 창고용지 창고	세로가 완경사	25,233	110,000	79,600	1.38	2012-04-18 (담보)
c (본건)	당목리 478-7	창고	계획관리 창고용지 창고	세로가 완경사	25,233	105,000	67,400	1.56	2009-03-06 (경매)
d	당목리 444-23	창고	계획관리 창고용지 창고	세로가 완경사	876	105,000	90,000	1.17	2011-07-12 (담보)
e	당목리 440-3	대	계획관리 대 상업용	소로한면 평지	874	180,000	130,000	1.38	2013-05-10 (담보)
f	당목리 491-4	대	계획관리 대 단독	세로가 평지	474	101,000	81,000	1.25	2012-02-23 (담보)
g	당목리 444-7	창	계획관리 공장용지 공업용	세로가 완경사	3,547	129,000	112,000	1.15	2011-07-12 (담보)
h	당목리 662	창고	계획관리 창고용지 창고	세로가 평지	1,336	80,000	31,800	2.52	2010-12-07 (담보)

4) 매매사례(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)

일련 번호	소재지	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	도로 조건	토지면적 (㎡)	매매가액 (원)	토지면적 기준단가 (원/㎡)	매매시점	건물 사용승인일
				건물연면적 (㎡)				
A	당목리 444-7	계획관리 공장용지 공업기타	세로 (가)	2,314.0	315,840,000	136,491	2013-02-25	해당없음
				건물없음				
B	당목리 627-5	계획관리 대 상업용 (숫가마)	세로 (가)	8,842.0	1,245,719,000	140,887	2013-02-25	2006-12-11
				895.0				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5) 기타참고자료(경매동향)

구분	경기도 안성시			비고
	유형별	낙찰율(%)	낙찰가율(%)	
경매동향	창고	31.25	69.85	최근 1년 평균
	공장	28.89	67.06	
	단독	35.56	71.23	

자료 : 지지옥션

6) 비교사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

가) 비교사례의 선정

선정 비교사례	기호 A
비교사례 선정의견	상기 인근 평가전례 및 매매사례 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, 지리적으로 근접하며, 평가가격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건과 비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.

나) 비교사례 기준 대상 토지가격

사례기호	단가(원/㎡)	사정보정	시점수정	지역요인	개별요인	토지가격(원/㎡)
A	136,491	1.00	1.00368	1.00	0.812	111,238
사정보정	본 비교사례는 개별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됨.					
시점수정	2013.02.25~2013.05.31 까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함.					
지역요인	대상 토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이 대체로 유사함.					
개별요인	대상토지는 비교사례에 비해 획지조건(형상, 지세 등)과 간선도로 접근조건 등에서 열세함.					

3)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 전 대상 토지가격

기호	공시지가(원/㎡)	시점수정	지역요인	개별요인	토지가격(원/㎡)
1	81,000	1.00562	1.00	0.850	69,237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4)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

기호	①-비교사례 기준가격(원/㎡)	②-공시지가 기준가격(원/㎡)	보정치의 산출(① / ②)
1	111,238	69,237	1.607

5)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

결정의견	본 건 주변의 지가수준, 거래동향, 인근의 매매사례, 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, 환가성,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상기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.
그 밖의 요인 보정치	1.60

바.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

기호	공시지가 (원/㎡)	시점수정	지역요인	개별요인	그 밖의 요인	산정단가 (원/㎡)	결정단가 (원/㎡)
1	81,000	1.00562	1.00	0.850	1.60	110,779	110,000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2. 건물의 평가

가. 표준신축단가(2012 년 건물신축단가표, 한국감정원)

분류번호	용도	구조	급수	표준신축단가 (원/㎡)	내용연수
5-1-6-11	일반창고	철골조 철골지붕틀 샌드위치판넬잇기	4	445,000	40 (35~45)

나. 재조달원가의 결정

상기의 표준신축단가표를 참고로 하여 본 건물의 구조, 용도, 시공의 정도, 마감재 수준,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신축단가에 부대설비 등에 따른 보정단가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함.

기호	구분	구조	경제적 내용연수	재조달원가 (원/㎡)	비고
가~라	지상 1 층	일반	35	445,000	

다. 건물단가의 산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 11 조에 의거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하되, 건물특성을 고려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물단가를 산정하였음.

기호	구분	재조달원가 (원/㎡)	내용연수	유효 경과연수	잔존가치율	건물단가 (원/㎡)	비고
가~라	1 층	445,000	35	7	28/35	356,000	창고시설

라. 건물가격의 결정

기호	구분	사정면적(㎡)	건물단가(원/㎡)	결정가격(원)
가~라	1 층	3,960	356,000	1,409,760,000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V.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

1. 감정평가액의 결정

구분	사정면적(㎡)	단가(원/㎡)	결정가격(원)
토지평가액	25,233	110,000	2,775,630,000
건물평가액	3,960	356,000	1,409,760,000
총액			4,185,390,000

2.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

본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, 인근 시세,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, 평가전례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물건의 시장성 등 평가목적에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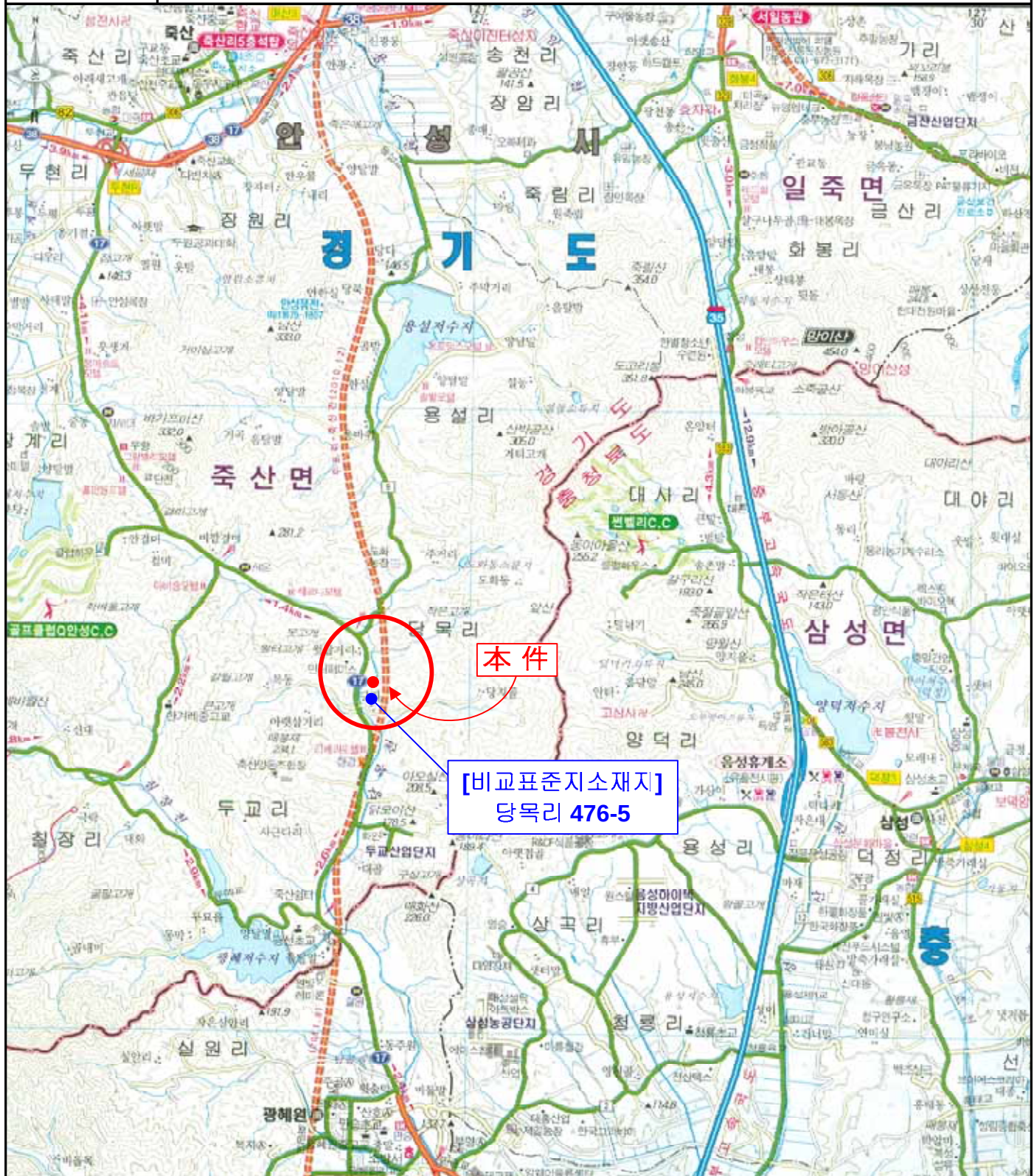
(토지 · 건물) 감정평가 명세표

일련 번호	소 재 지	지번	지 목 및 용 도	구 조	면 적 (㎡)		감 정 평 가 액		비 고
					공 부	사 정	단 가	금 액	
1	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	478-7	창고용지	계획관리지역	25,233	25,233	110,000	2,775,630,000	
가	"	위지상 가동	창고시설	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1층	990	990	356,000	352,440,000	445,000 ×28/35
나	"	위지상 나동	창고시설	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1층	990	990	356,000	352,440,000	445,000 ×28/35
다	"	위지상 다동	창고시설	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1층	990	990	356,000	352,440,000	445,000 ×28/35
라	"	위지상 라동	창고시설	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1층	990	990	356,000	352,440,000	445,000 ×28/35
	합 계							₩4,185,390,000	
			이	하	여	백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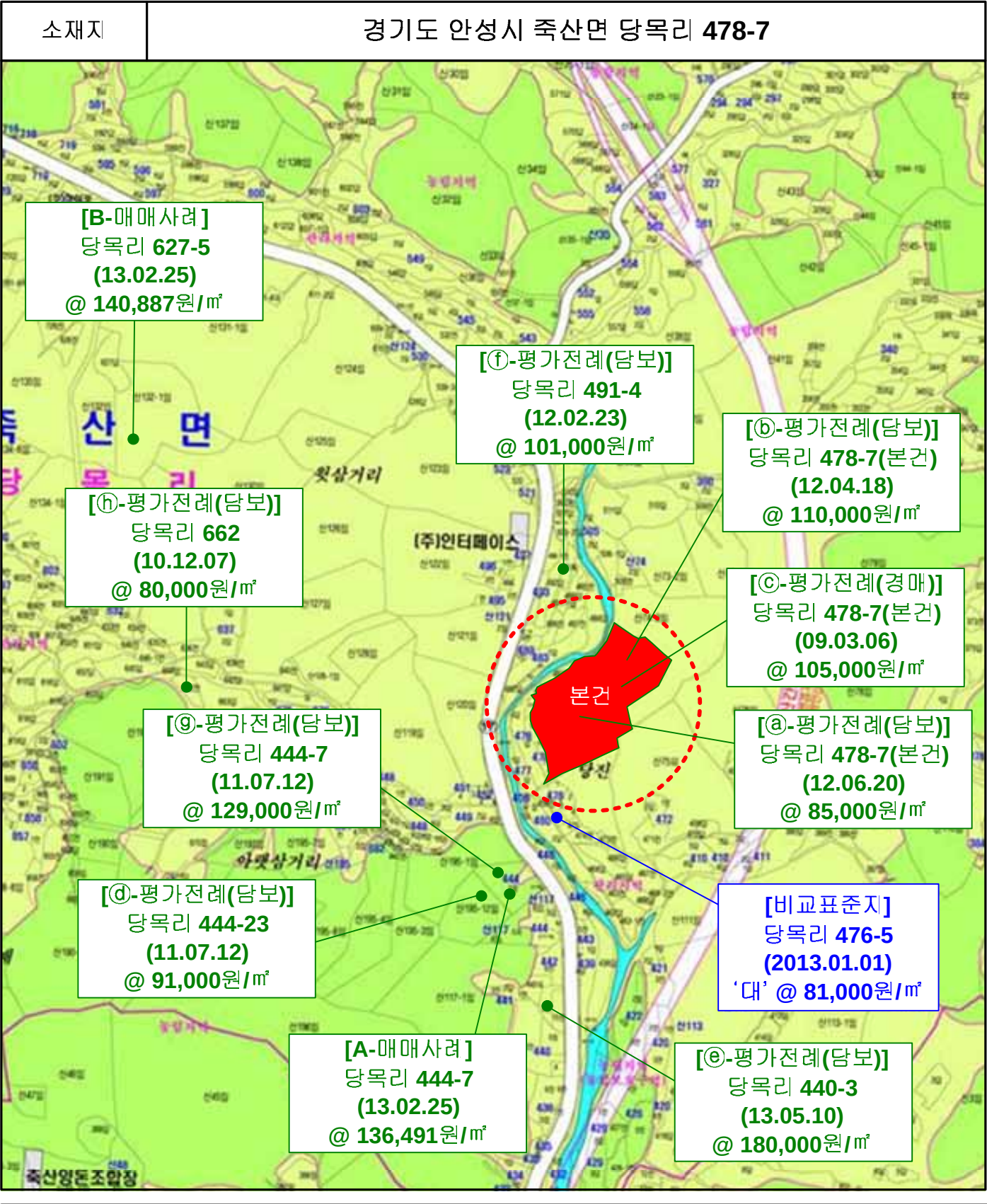
위 치 도

소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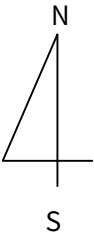
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78-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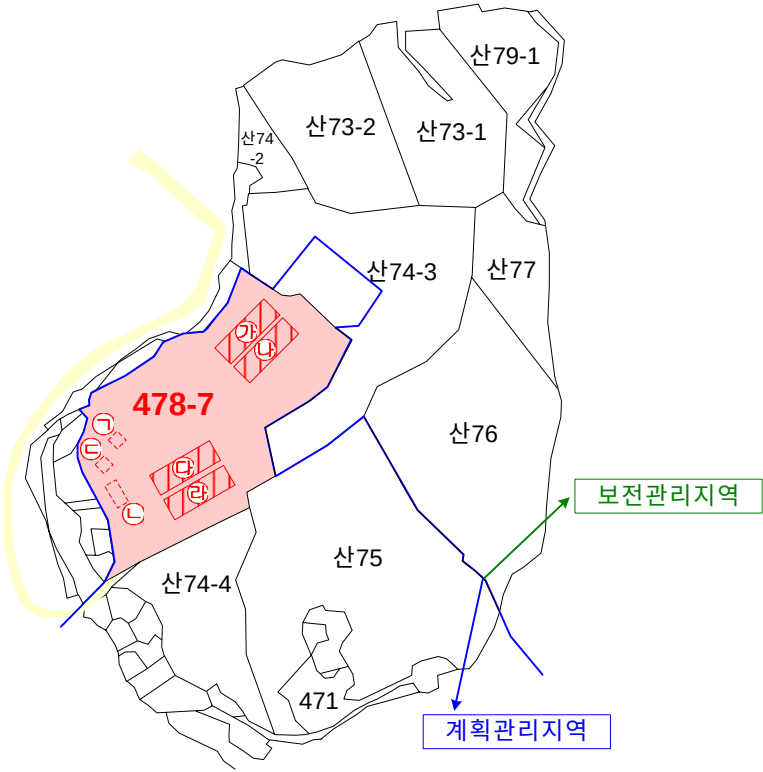
위 치 도



지 적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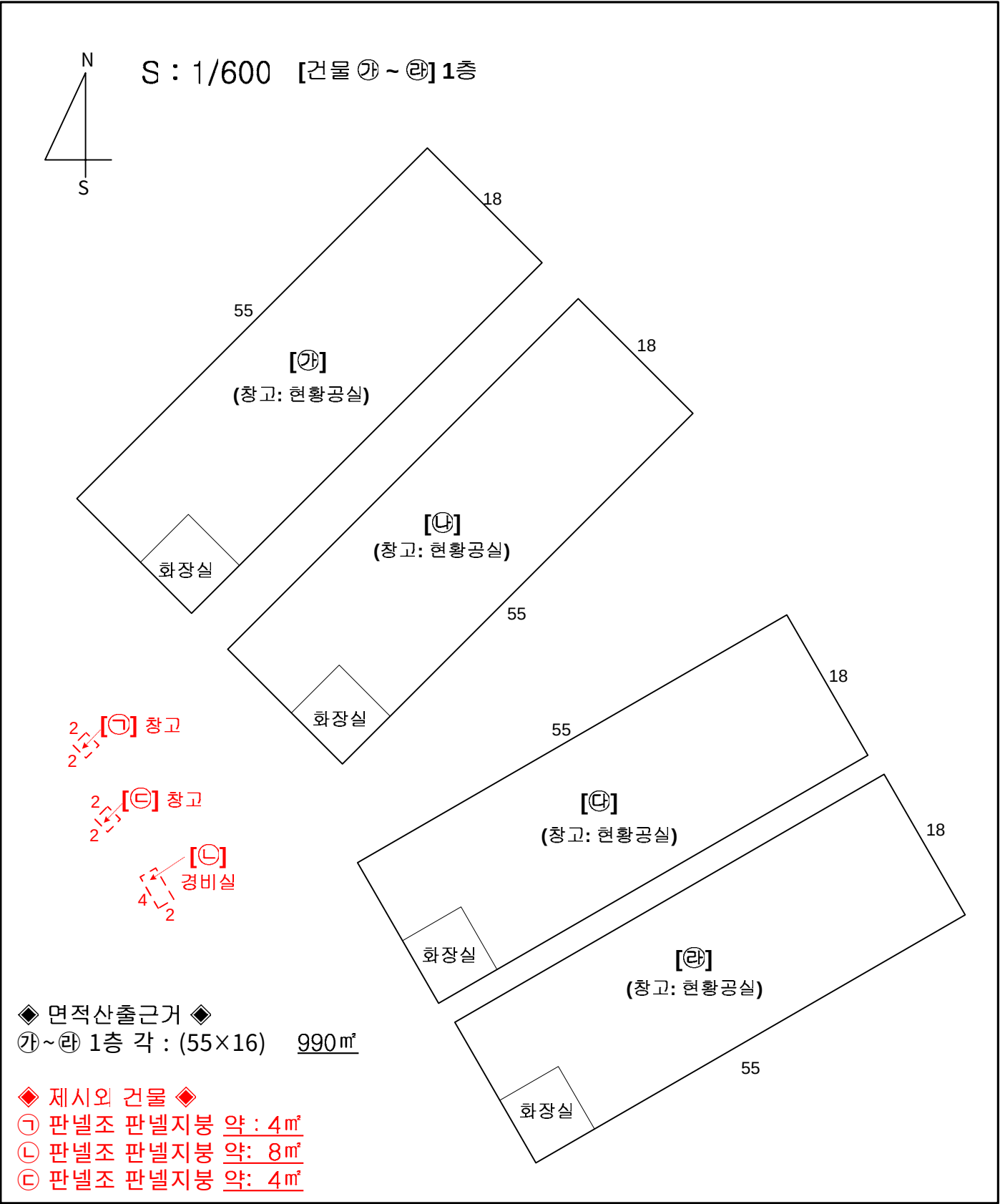


S : 1/6000



범 례		평가대상토지		용도지역구분선		평가건물3층이상
		도로선		평가건물1층		평가제외건물
		도시계획선		평가건물2층		제시외건물

건물개황도



사 진 용 지



【 본 건 및 주위환경 】



【 본 건 주위환경 】

사 진 용 지



【 본 건 기호(가),(나) 】



【 본 건 기호(다),(라) 】

사 진 용 지



【 본 건 내부사진 기호(가)~(라)동일 】



【 본 건 토지중 조성된 나지부분 】

사 진 용 지



【 제시외 ㉠ 】



【 진입로 및 제시외 ㉡,㉢ 】

(주)가람감정평가법인

우:463-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-3 대정빌딩 6층 전화:031-707-5733 전송:031-707-5766

문서번호 : 가람 0513-05-31013 호

발송일자 : 2013.06.05

수 신 : 주식회사코리아냉장

참 조 :

제 목 : 감 정 의뢰에 대한 회보

선 결			지 시		
접	일 시 간		결		
수	번 호		재 · 공		
	처 리 과				
	담 당 자		람		

1. 우리 법인의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,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3.05.31일자 귀 제『 — 』호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『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78-7 』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.

3. 우리 법인은『 부가가치세법 』 제 16조의 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세금계산서 미요청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며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이 불가합니다.

■ 필요사항 : 사업자등록증 사본 / 담당자 성명 / 전화번호 (유선 / 휴대폰)
/ E-mail (감정평가서 번호,채무자명 기재 요망)

첨 부 : 1. 감 정 평 가 서 2 부.
2.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서 1 부. 끝.

(주)가람감정평가법인
동부지사장

수 수 료 청 구 서

감정평가서번호 : 가람 0513-05-31013호
2013. 06. 05

주식회사코리아냉장 귀하

一金四佰壹拾壹萬七仟參佰원整.-(₩4,117,300.-)

2013. 05. 31자 귀 제 『 — 』호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 『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78-7 』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금액을 『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』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청 구 내 역 -

과 목		금 액	비 고	
평 가 수 수 료		3,643,312	(4,185,390,000×8/10,000×1.00 +295,000)×1.00 3,643,312	
실 비	토지조사비	0		
	물건조사비	12,000		
	여비교통비	75,000		
	공부발급비	2,500		
	특별용역비	0		
	기타 실비	10,800		
	자료수집비	0		
	실 비 계	100,300		
공 급 가 액		3,743,000	₩1,000원 미만 절사	
세 액		374,300		
총 계		4,117,300		
기 납부 착수금		0		
정 산 청 구 액		4,117,300	환 불 액	0

※ 송 금 처

(주)신한은행 140-008-756674 (주)가람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
우리은행 1005-800-983821 (주)가람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
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 번호(0513-05-31013)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(주)가람감정평가법인
동부지사장

대표전화 : 031-707-5733 팩 스 : 031-707-5766
법인사업자등록번호 : 129-85-29149